

#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및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기준 연구\*

金 炳 昊\*\*

.....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및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현행 한국기준, 미국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을 비교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안은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간의 분류변경은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만기 이전에 매도하거나 분류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규정(penalty)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규정은 모든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2년 동안 만기보유증권으로의 재분류를 금지하며, 매도가능증권으로의 재분류 시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미실현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감액손실의 경우 제시된 안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모두 동일한 감액손실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며, 감액손실의 환입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

##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및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현행 한국기준, 미국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을 비교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관련 규정이 본문, 준칙, 그리고 해석에 관련내용이 산재되어있는데, 기업회계기준 본문에서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규정은 본문 제 13 조 당좌자산의 3 호에서 유가증권을 정의하였고, 제 17 조의 투자자산 제 2 호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 56 조에서 유가증권의 평가, 제 59 조에서 투자주식의

---

\* 본 논문은 IBRD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이다.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평가, 제 60조에서 투자채권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에서는 각 업종별로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업종별 준칙에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등이 포함된다. 각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재분류, 상품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업종내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국제회계기준<sup>1)</sup>에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은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과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그리고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의 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SIC)의 2개의 해석 SIC Interpretation 5,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Contingent Settlement Provisions와 SIC Interpretation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등에 포함되어 있다. IAS 32와 IAS 39는 미국기준보다 최근에 제정되었으며 미국의 기준에 비하여 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IAS 39는 미국기준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IASC는 미국기준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기준에서는 채무증권(debt security)과 지분증권(equity security)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대하여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IAS 32에서는 부내(on-balance-sheet) 뿐만 아니라 부외(off-balance-sheet)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IAS 32에서는 금융상품을 자산과 부채로의 분류, 이자 및 배당금과 관련된 이익 손실의 인식,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채무자산과 채무부채가 상쇄될 수 있는 조건 등을 다루고 있다. IAS 39에서는 헤징(hedging) 거래를 포함한 기업의 채무자산과 채무부채에 관한 인식, 측정, 공시정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에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한 틀 및 총 31개의 각 항목별 기준, 그리고 Exposure Draft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도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기준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경우 먼저 Exposure Draft를 발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기존의 기준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고 있다. 당초에는 IAS 25, Accounting for Investments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debt investment)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equity investment),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타 tangible asset과 intangible asset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괄하고 있었지만, IAS 39가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그리고 기타 tangible 및 intangible asset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관련 국제회계기준은 IAS 25가 아니고 IAS 39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회계기준<sup>2)</sup>에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대한 미국의 규정들은 APB Opinion과 그에 대한 해석, FASB Statement 115호와 FASB Statement 133호 및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Technical Bulletins; EITF Issues; SEC Staff Accounting Bulletins와 기타 지침; 그리고 다른 공시규정 등의 여러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미국의 회계 처리 규정은 특정 산업 혹은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간혹 다른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미국의 기준은 오랜 기간동안에 특별히 새롭게 확인된 계약에 대한 규정 마련, 혹은 새로이 개발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특정 산업에서의 보고문제, 혹은 두 가지 다른 현재의 기준 혹은 산업실무 사이의 인식된 문제점에 대한 규정 마련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관련 FASB Statement로는 제 115호의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와 제 133호의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등이 있으며, 관련 Guide로는 A Guide to Implementation of Statement 115 on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 and Equity Securities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는 Statement는 제 115호로 여기에서는 공정가치가 즉시 결정(확정) 가능한(readily determinable fair value) 증권에 대한 회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의 한국, 미국, 국제기준, 그리고 개선안

2) 미국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간주되는 statement로는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43호(과거의 발행문건들을 종합한 것임)와 44호~51호,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1호~4호, Accounting Principle Board Opinions 1호~31호,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발표한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1호~139호,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Interpretation 1호~40호, Technical Bulletin, 그리고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1호~6호 등을 들 수 있다.

에 대하여, 3 장에서는 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의 한국, 미국, 국제기준, 그리고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II.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 1. 한국기준에서의 분류변경

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의 분류변경 허용 여부와 분류변경시의 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채권의 경우 만기보유채권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혹은 중도매각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의 변경 허용 여부와 분류변경시의 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논의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해석 54-90에서는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외에 만기보유채권을 중도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이외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 8항에서는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 이외의 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류변경에 따른 별도의 penalty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분류변경 혹은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다른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의 평가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손익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분류변경에 대한 규정을 각 경우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의 분류변경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

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 재분류는 허용하지만, 손익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평가후 재분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회계처리하는 결산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의 분류변경

이 경우는 손익조작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 13조 3호). 즉, 자본조정항목인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혹은 계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가증권으로 분류변경하여 당기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익조작은 기업에서 선별적으로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gains trading*이라고 하는데, 투자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기준이나 국제기준에서는 *available for sale* 증권에서 *trading* 증권으로의 분류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회계기준 제 13조 3호에 따르면 1년 내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투자채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는 경우, 투자주식의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처분하게 될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해석적용사례 2000-12 투자채권의 유가증권 대체에 따르면, 투자채권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투자채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 투자채권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이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투자채권의 계정 재분류시에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에 투자채권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재분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13조 3호의 내용과 해석적용사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규정을 해석 54-90에서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잔여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만기가 3개월 미만일지라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고정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현재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만기보유채권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만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 유가증권으로의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3) 만기보유채권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의 분류변경

기업회계기준 제60조 8호에서는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 이외의 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업의 보유목적의 변경만으로도 재분류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해석 54-90에서는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및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금지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penalty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만 이러한 penalty를 규정할 것인지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와 같이 금융기관 이외의 모든 기업에도 적용시킬 것인지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

만기보유채권을 투자채권으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 제60조 8호). 이 경우 제60조 3호에 따르면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중도매각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의 분류변경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중도매각채권을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기보유채권은 최초 취득시 투자자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중도매각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의 분류변경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준 및

국제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2. 미국기준에서의 분류변경

IAS 39와 FASB Statement 115에서는 한정된 상황(두 기준에서 정한 상황은 동일함)에서만 held-to-maturity의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held-to-maturity 증권이 매각되었는데, 이 매각이 이러한 한정된 상황 중의 하나가 아닐 경우, 기업이 이러한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능력과 의도가 미국기준과 국제기준 모두에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두 기준 모두에서 held-to-maturity로 분류된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을 한정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매각하였을 경우, 현재 held-to-maturity로 분류된 모든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available for sale로 재분류가 되며, 공정가치로의 재측정(remeasurement)에 기인한 이득 혹은 손실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held-to-maturity security의 매각 혹은 분류변경에 대한 규제가 유사할 지라도 IAS 39에서는 다시 held-to-maturity의 분류를 재사용할 수 있는데 대한 규정이 더 구체적이다. IAS 39에서는 어떠한 재무자산(financial asset)의 held-to-maturity로의 재분류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정은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의 held-to-maturity로의 분류에 대한 제한을 경영진이 debt security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신뢰성 있게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하고 있다.

FASB Statement 115에서의 held-to-maturity category로부터의 분류변경은 매우 드물며 그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trading security의 성격상 trading category로부터 혹은 trading으로의 분류변경도 매우 드물다. 다음은 미국기준에서의 분류변경에 대한 처리기준이다.

미국기준에서 security간의 transfer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측정된다. transfer 시점에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가) trading category로부터 분류가 변경되는 security는 분류변경 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나) trading category로 분류가 변경되는 security는 분류변경시점에서 미실현보유이익이나 손실이 당기손익으로 즉각 인식된다. 따라서 전기말에 trading category에서 자

분항목인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서 인식되었던 미실현보유이익(손실)과 변경 시점에서 전기말의 공정시가와 변경시점에서의 공정시가의 차이가 합계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다) held-to-maturity category에서 available for sale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other comprehensive income)에서 인식된다.

(라) available for sale category에서 held-to-maturity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계속적으로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에서 보고되며, 다른 할인 혹은 할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의 잔여기간동안 상각된다. 지분증권에서 보고되는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의 상각은 held-to-maturity 채권의 할증 혹은 할인을 통하여 이자수익의 영향을 없애거나 감소시킨다.

(마) 채권의 경우 held-to-maturity로 변경될 때, 공정가치의 사용은 할인 혹은 할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상각원가회계하에서 상각이 된다.

FAS 115에서의 held-to-maturity category로 부터의 분류변경은 매우 드물며 그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trading security의 성격상 trading category로부터 혹은 trading으로의 분류변경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야 한다.

### 3. 국제기준에서의 분류변경

Security간의 분류변경은 공정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분류변경 시점에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available for sale에 대한 평가를 공정가치에 의하지만 그 변화는 손익계산서에 공시하거나 자본항목으로 공시하거나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vailable for sale 증권의 분류변경에서는 공정가치의 변화를 어디에 보고하였는가에 따라서 방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 ▼ available for sale 증권의 미실현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경우

(가) trading category로부터 분류가 변경되거나 trading category로 변경될 경우 분류계정만 바뀌고 다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available for sale category에서 held-to-maturity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이 손익계산서상에서 인식된다.

(다) held-to-maturity category에서 available for sale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이 손익계산서상에서 인식된다.

▼ available for sale 증권의 미실현손익이 자본항목에 반영되는 경우

(가) trading category로부터 분류가 변경되는 security는 분류변경 시점에서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이 손익계산서상에서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trading category로 분류가 변경되는 security는 분류변경시점에서 미실현보유이익이나 손실이 손익계산서상에서 즉각 인식된다.

(나) held-to-maturity category에서 available for sale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에서 인식된다.

(다) available for sale category에서 held-to-maturity category로 분류 변경되는 채권은 분류변경시점에서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계속적으로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에서 보고 되며, 다른 할인 혹은 할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의 잔여기간 동안에 상각된다. 지분에서 보고되는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의 상각은 held-to-maturity 채권의 할증 혹은 할인을 통하여 이자수익의 영향을 없애거나 감소시킨다.

국제회계기준에서 held-to-maturity category로부터의 분류변경은 매우 드물다고 강조하며, 그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 4. 미실현보유손익 인식에 대한 논란

분류변경시에 미실현보유이익(손실)의 인식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분류변경시점에서의 어떠한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도 모두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면, 이득발생거래(gains trading)를 촉발시킬 수가 있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 경영진의 의도변화가 가격이 상승한 증권을 분류 변경하여 이익을 즉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 변경되는 증권의 경우 모든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자본항목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처럼 투자유가증권에

〈표 1〉 분류변경에 대한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기준의 비교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함.</li> <li>-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비금융기관인 경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 투자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는 기업회계기준 13조 3호와 일치하지 않음.)</li> <li>- 만기보유채권에서 투자채권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함. (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에서는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으로 가능. (나) 금융기관에서는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외 처분 시에 다른 만기보유채권을 모두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함.</li> <li>- 투자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 허용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vailable for sale 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 미국과 동일함.</li> <li>▼ available for sale 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li> <li>- trading에서 available for sale로의 변경과 available for sale에서 trading으로의 변경시 모두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처리</li> <li>- available for sale에서 held to maturity로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li> <li>- held to maturity에서 available for sale로의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ding으로부터 분류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li> <li>- trading으로의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li> <li>- available for sale에서 held to maturity로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으로 인식.</li> <li>- held to maturity에서 available for sale로의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소유주지분의 별도항목으로 인식하고 다른 할인 혹은 할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의 잔여기간 동안 상각</li> </ul>

서 유가증권으로의 분류를 금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변경되는 분류에 따라서 미실현보유이익과 손실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분류변경으로 증권이 trading category로 이동할 때에 한하여 미실현보유이익과 손실을 당기손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인식되지 않은 미실현보유이익과 손실은 자본항목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미실현보유이익과 손실을 분류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이후의 분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한국기준은 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의 분류는 가능하지만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유가증권평가손익(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포함되므로 단순한 계정재분류로 인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재분류시키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gains trading을 통하여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

## 5. 분류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분류변경에서는 한국기준과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한국기준에서는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의 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단 기간의 경과에 따라 만기가 1년 미만인 투자가채권은 유가증권으로 재분류는 가능하다.)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는 available for sale에서 trading으로의 분류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준에서는 투자가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의 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는 available for sale에서 held to maturity로의 전환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에서는 held to maturity가 원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held to maturity로 분류시키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일단 held to maturity로 분류된 이후에도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available for sale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held to maturity를 available for sale로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전환을 하면 penalty가 주어지는데 penalty의 정도는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및 국제기준의 경우 더 세부적인 규정을 두면서 더 탄력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손익조작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에서 선별적으로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이득발생거래(gains trading)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실효성

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기준에서는 만기보유채권을 투자채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해석 54-90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보유목적의 변경”에 의하여 만기보유채권을 투자채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해석에서는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 만기보유채권을 중도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채권의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 변화
- (2) 유동성의 필요
- (3) 다른 곳으로의 대체투자
- (4) 외국환위험의 변화
- (5) 자금의 원천 및 조건의 변화

(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채권이 매각되었을 때 분류목적으로 만기보유채권으로 간주된다.

- (1) 채권의 매각이 그 만기일에 매우 가까이 일어나서 이자율위험이 가격결정요소에서 상당히 해소된 경우. 즉 매각시점이 만기일에 매우 가까워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의 변화가 채권의 공정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2) 기업이 채권 구입 시의 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미 수취한 이후 채권을 매각하였을 경우(예를 들어 85% 이상).

(다)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 변경하거나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 (1) 채무증권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는 증거가 발생한 경우
- (2)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 (3) 주요 기업결합 혹은 기업의 부분 매각 등이 발생하여 기업이 현재의 이자율 위

협관리정책 혹은 신용위험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매각하든지 혹은 분류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라) 보유목적의 변경에 의하여 매도가능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위의 (라)는 현행 한국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의 분류변경을 금지시키는 것과 상반되지만, 분류변경을 금지시키더라도 투자유가증권의 선별적 매도를 통하여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목적의 변경되면 이러한 분류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며, 단 이러한 보유목적의 변경을 통하여 분류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야 한다.

(마) 매도가능채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에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보고 되며, 이 미실현보유손익은 채권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된다. 또한 채권의 매입이후에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 혹은 감소된 장부가액 변동액도 채권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된다. 이러한 미실현보유손익의 상각과 채권매입이후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 혹은 감소된 채권의 장부가액 변동액의 상각은 서로 상쇄되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채권이 매입시점에서 할인 혹은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그 할인액과 할증액은 채권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A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채권을 2000년 12월 31일부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 변경하였다. 이 채권의 액면가액은 100,000원이며 10년 이후에 만기가 된다. 이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분류변경 이전		분류변경 이후	
<u>매도가능증권</u>		<u>만기보유증권</u>	
원가	공정가치	원가	공정가치
100,000원	104,000원	100,000원	104,000원

(1) 분류변경에 대한 분개:

(차변)	(대변)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 * 4,000 원	
만기보유증권	100,000 원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조정 * 4,000 원
	매도가능증권
	100,000 원

분류변경 이후에 자본조정항목에 있는 미실현보유이익 4,000 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 공정가치조정 계정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치의 증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공정가치의 변화를 직접 매도가능증권계정에 가감하는 방법과 위의 예에서와 같이 공정가치조정이라는 평가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될 경우 공정가치조정에 의하여 가감된 금액을 만기에 걸쳐서 상각하기 위함이다.

(2) 분류변경 이후의 공정가치조정과 미실현보유이익에 대한 상각:

분류변경 이후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 4,000 원과 미실현보유이익 4,000 원은 잔여기간동안 상각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상각	$(4,000 \text{ 원} \div 10 \text{ 년}) = (400 \text{ 원})$
미실현보유이익에 대한 상각	$(4,000 \text{ 원} \div 10 \text{ 년}) = 400 \text{ 원}$
순 조정금액	0 원

분개:

차변	대변
미실현보유이익 400 원	공정가치조정 400 원

만기에 걸쳐서 미실현보유이익과 공정가치조정을 상각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서 만기보유채권의 장부가액은 100,000 원이 되며, 공정가치조정과 미실현보유이익의 잔액은 0이 된다.

(3) 채권이 할인 혹은 할증 발행되었을 경우:

만약 채권이 할인 혹은 할증 발행되었다면, 발행시점에서 발생한 할인차금과 할증차금은 채권의 잔여기간동안 상각된다.

## 〈표 2〉 분류변경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 회계의 개선방안

## 개선방안

-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분류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단기매매증권으로의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 만기보유채권에서 매도가능채권으로 변경: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인식하고 다른 할인 혹은 할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의 잔여기간동안 상각
- 만기보유채권의 분류변경 혹은 매각은 한정된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 이후 2년 동안은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보유 목적에 따라 허용한다.

(바)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분류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사) 만기보유채권에서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에서의 미실현보유이익 혹은 손실은 자본조정으로 인식된다.

### III. 유가증권에서 감액손실(Impairment)에 대한 회계처리

#### 1. 한국기준에서의 감액손실

한국기준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해서 지분법적용이 되는 주식을 제외한 투자주식 및 투자채권의 공정가액(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순자산가액)의 차액을 당기손실(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 40-59에서 다음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가) 은행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화의법에 의한 회사의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나 위의 (바)의 경우에는 다음 사례가 발생하거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공정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 유상증자, 매출증가, 순이익의 증가 및 현금흐름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종업종의 영업양수 등에 의한 확인된 영업권이 있거나 보유부동산 등의 실질가치 고려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공정가액의 하락은 감액손실회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자율의 변동 등과 같은 시장위험 증가에 따른 공정가액의 하락은 감액손실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감액손실회계의 적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및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당해 회사는 존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므로 당해 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의 회복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위험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은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변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했다라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국가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당해국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위험이 커지는 등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상대적 신용도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의 하락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변화이므로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당해 국가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은 감액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이후 공정가액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추가적인 감액손실)에 추가 하락분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당기손실)로 처리한다. 공정가액이 회복되는 경우 투자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본

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하고,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되었다면 투자주식의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순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당기이익(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의 경우 투자채권을 회복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차액을 당기이익(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복된 공정가액은 당해 투자채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중도매각채권(만기보유목적 이외의 투자채권)은 회복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차액을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준칙(은행, 증권, 보험, 증권투자신탁, 종합금융 준칙참조)은 감액손실에 대한 회복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원칙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업종별 준칙들에서 감액손실 회복에 대한 규정들은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처리하고,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 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간의 감액손실 회복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는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인식하나, 금융기관에서는 당초 장부가액까지를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채권에 있어서는 만기보유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 모두 감액손실의 회복은 당초 장부가액까지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도매각채권의 경우 비금융기관에서는 감액손실의 회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초 장부가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2.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의 감액손실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에서 held-to-maturity와 available for sale로 분류된 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처리에 대한 회계요건에 차이가 있다. IAS 39에서는 기업이 매 대차대조표 일에 감액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를 평가한다. IAS 39(paragraph 110)에서는 어떠한 것이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는가를 열거하고 있다.

미국기준(Statement 115 paragraph 16)에서 감액손실은 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닌 경우에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액손실은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며, 그 예로 투자자가 채무증권의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probable) 경우를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손실의 인식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감액손실의 크기는 두 기준 모두 자산의 장부기준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손실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AS 39의 paragraph 110에 있는 감액손실에 대하여 감액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언급된 바와 같이 IAS에서는 증권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재무자산(financial asset) 전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래에는 증권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한다.

(가) 그 자산(여기에서는 채권 혹은 주식)의 발행회사가 심대한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

(나) 이자 혹은 원금지불의 이행이 안 된 채무계약의 실제적 불이행

(다) 채무자와 관련된 경제적 혹은 법률적 이유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유가 없었으면 고려하지 않았을 부채에 대한 양보(concession)를 하였을 경우

(라) 높은 부도 확률 혹은 발행기업(인)의 재무적 reorganization

(마)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당해 재무자산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active market)이 없어진 경우(여기에서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공개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거래가 활발한 시장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단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고 이것이 감액손실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것이 다른 가능한 정보

와 함께 감액손실의 한 가지 증거는 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한국기준에 비하여 감액손실의 대상에 대하여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발행인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중에서 시장위험의 경우, 즉 일상적인 변동의 경우에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손실의 해당조건으로 신용위험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규정은 “당좌거래 정지처분중, 정리절차의 개시, 화의 개시절차, 청산, 휴업, 완전자본잠식 등”과 같이 감액손실의 대상을 국제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기준에서는 “심대한 재무적 곤경, 계약 불이행” 등으로 좀 더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신용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기준은 “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여 국제기준보다 더 포괄적이다. 미국기준은 이러한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하락이 반드시 신용위험에 의한 것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의 변화에 의하든지 관계가 없다.

이러한 감액손실의 인식은 미국기준에서는 새로운 장부가치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후의 추가적인 가치의 변화는 자산의 분류에 기초하여 회계처리된다. 즉, held-to-maturity security의 경우 감액손실 이후의 추가적인 가치의 변화(감액손실이 아닌)는 실현되기 전까지는 인식되지 않으며,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의 경우에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자본항목)으로 인식된다.

특히 미국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기말대차대조표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주식사항으로서 감액손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현재에는 일시적인 가치의 하락으로 판단하여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공시하였으나,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추가적인 상황으로 일시적인 아닌 가치의 하락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미국 및 국제기준에서 감액손실의 회복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미국기준에서는 명백하게(expressly)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회복된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이익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매도

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의 경우에 자본항목으로 조정하고, 만기보유증권(held to maturity)의 경우에는 회복에 대한 조정이 없다.

IAS 39에서 감액손실에 대한 회복은 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및 만기보유증권(held to maturity)의 경우 회복되면 당초의 장부가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에 대한 회복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느냐 미국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에서는 한국기준과는 달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기준에서 실제적인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치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가치의 하락은 인식되지 않으며, 앞에서 언급된 신용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하락시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되는 증권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의 분석에 기초하여 대차대조표일에 감액의 대상이 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가로 표시된 장부가액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동종의 증권과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증권에 대한 현재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손실에 포함시킨다. 차후에 이러한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당기이익에 포함시킨다.

미국기준에서 공정가치가 즉시 결정(확정) 가능(fair value is already determinable)하지 않은 매도가능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되는 증권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의 분석에 기초하여 대차대조표일에 감액의 대상이 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의 측정은 유사한 자산과 그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평가방법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할인한 예상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방법을 들 수 있다. 미국 기준에서는 감액 이후의 회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 표 3 〉 감액손실(impairment loss) 인식 및 회복의 비교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p>(1)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손실인식 (신용위험의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이라는 당기손실로 인식</p> <p>(2)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금융기관이외의 경우 (2-1)투자채권 만기보유채권: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이라는 당기이익으로 처리. 중도매각채권: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항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 (2-2)투자주식 - 시가로 평가하는 시장성이 있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자본조정항목에 계상. (따라서 원금의 회복을 손익계산서상에 인식하지 않음.) - 원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당초의 순자산가액까지)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이라는 당기이익으로 처리.</p> <p>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증권투자신탁, 종합금융 준칙)의 경우 -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처리 -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p>	<p>(1) 일시적이 아닌 손실의 경우 감액손실 인식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 주로 발행인의 신용위험에 의한 경우임. 한국 기준보다는 포괄적인 경우를 들고 있음): 당기손실로 인식</p> <p>(2)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impairment loss에 대한 회복은 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손익계산서항목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장부가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자본항목으로 처리.</p> <p>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차이 없음.</p>	<p>(1) 일시적이 아닌 손실의 경우 감액손실 인식하며, 당기손실로 인식 (IAS와는 달리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지 않음. 신용위험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포함 가능.)</p> <p>(2)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새로운 장부가치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후의 추가적인 가치의 변화는 자산의 분류에 기초하여 회계처리됨. (held-to-maturity security의 이후 추가적인 가치변화는 실현되기 전까지는 인식되지 않으며,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자본항목)으로 인식됨)</p> <p>impairment loss의 회복은 미국기준에서는 명백하게 (expressly) 금지되어 있다.</p> <p>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차이 없음.</p>

#### 4.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 대해 한국기준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 40-59에서 규정하였다. 국제기준에서나 미국기준에서는 “일시적이 아닌 가치의 하락”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 경우를 나열하였다. 나열된 각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가 발행인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제기준이 한국기준보다는 그러한 경우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미국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규정은 발행인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상황변경에 의해서라도 일시적이 아닌 가치 하락의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국규정 그대로 유지하든지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기준과 같이 “일시적이 아닌 손실”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감액손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기업경영인이 기회주의적으로(*opportunistically*)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모든 구체적인 감액손실의 경우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액손실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감액손실 회복에 대한 회계처리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을 비교하면 국제기준에서는 감액손실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였으며 이 경우 당기손실로 회계 처리되고,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에는 다시 당기이익으로 환입된다. 이에 반하여 미국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열거가 없으며 일시적이 아닌 손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해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만, 한번 감액손실이 되면 회복되더라도 당기이익으로의 환입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번 감액손실로 인식이 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규정이 포괄적이라 남용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감액손실의 적용에 상당히 신중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해당 감액손실 인식 조건에 해당되면 감액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다시 회복이 되면 당기이익으로 환입시키는 것이다.

한국기준에서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복은 금융기관에서와 금융기관이외에서 처리규정이 다르고, 금융기관 이외에서는 시가로 평가되는 투자주식과 중도매각채권의 경

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이라는 자본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미국기준과 같고, 원가로 평가되는 투자주식과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이라는 손익항목으로 처리해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외에는 시장성이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일단 감액이 되고 난 이후의 회복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되고,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까지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이라는 당기이익항목으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의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은 투자채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이라는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중도매각채권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이라는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처리하며,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목으로 자본 조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감액손실에 대한 회복을 회계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관된(consistent)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감액손실의 회복을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기보유채권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작에 대한 여지를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의 감액손실대상의 규정을 현재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일시적이 아닌 손실”로 규정하든지, 국제기준에서처럼 발행회사가 심대한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을 때의 경우처럼 포괄적이면서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 손실이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모든 경우에 감액손실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에 일단 감액이 되면 감액의 회복은 당기이익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감액손실의 남용을 통한 이익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기준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에 대한

〈표 4〉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1) 신용위험에 의한 일시적이 아닌 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

- 채권: 매도가능채권과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
- 주식: 매도가능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

(2) 감액손실이 회복된 경우

- 새로운 장부가치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후의 추가적인 가치변화는 증권의 분류에 기초하여 회계 처리됨.
- 감액손실 이후의 추가적인 가치변화(일시적인)는 실현되기 전까지는 만기보유채권의 경우 인식되지 않으며, 매도가능증권은 자본조정으로 인식함.
- 감액손실의 회복은 금지됨.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서 감액손실의 인식 및 회복에 대한 회계처리에 차이 없음.

회계처리가 상이하다. 언급하면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인식하나, 금융기관에서는 당초 장부가액까지를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채권에 있어서는 만기보유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 모두 감액손실의 회복은 당초 장부가액까지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도매각채권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금융기관에서 감액손실의 회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초 장부가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록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이 서로 상이한 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간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낮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와 같이 감액손실의 회복을 당기이익에 반영하든지, 미국기준처럼 감액손실의 회복을 인식하지 않든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금융감독위원회 (2002). 기업회계기준. 준칙, 예규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1993). 금융제도개편연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 박경서, 연강흠, 오창석, 우영호, 이광수 (1997).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송인만 (2000). *중급재무회계 6판*. 신영사.
- 오승현, 김정미 (1999). *국채시장 구조의 이론과 사례*. 한국증권연구원.
- 채권시장제도 개선 연구반 (1998). *채권시장 제도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1999).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요해*.
- Coopers and Lybrand (1993). *International Accounting Summaries*. Second Ed., Wiley.
- Copeland, Ronald M., Robert Strawser, and John G. Binns (1972). Accounting for Investments. *The Accounting Review*, Oct. pp. 756-64.
- Delaney P., and B. J. Epstein, J. R. Adler, and M. F. Foran (2001), *GAAP 2001*. Wiley.
- Epstein, B. and A. A. Mirza (2001), *IAS 2001*, Wiley.
- Fabozzi, Frank J. (1993), *Bond Markets, Analysis and Strategies*. 2nd ed., Prentice-Hall, Inc.
- FASB (2001), *The IASC-US Compararison Projects*. Second Edition.
- Kieso D. E. and J. J. Weygandt (2001). *Intermediate Accounting*. eighty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 Lloyd, B. Michl and Jerry J. Weygandt (1971). Market Information for Nonsubidiary Investments in Common Stock. *Financial Executive*, Feb., p. 46
- Sundaresan, Suresh (1997). *Fixed Income Markets and Their Derivatives*.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A Study on the Accounting Methods for Transfer of Category and Impairment Loss of Securities

Byoung-Ho Kim\*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transfer of the classifi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of securities, and mak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s. This paper suggests that transfers between trading and available for sales be allowed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The sale of held to maturity securities without consequence is permitted in limited circumstances. If a held to maturity security is sold but the sale does not qualify as one of the limited circumstances, the enterprises' ability and intent to hold any financial securities to maturity would be called into question. Further, the sale of any held to maturity security that does not qualify for an exception would require that all debt securities currently classified as held to maturity be reclassified as available for sales, and any gain or loss on re-measurement to fair value related to the reclassification would be included in income. A two year moratorium is imposed on classifying any financial asset as held to maturity. For the accounting of impairment loss,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same rule is applied for the accounting of the reversal of impairment loss i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Reversal from the impairment loss of all institutions is recognized in net earnings.

Keywords: Impairment loss, transfer of category, classification of securities

---

\*School of Business, Kookmin University